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136
----------	--------

제출년월일 : 2025. 11. .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상위법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가정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로 함
- 나. 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다.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라. 입양가정 지원사업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마. 입양축하금 등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양식, 지원대상, 결정통지서 및 환수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입양특례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5. 9. 18.~10. 10.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5.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 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없다면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입양아동 양육수당
2.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3. 입양아동 의료비

4. 상담 및 심리치료비

5. 입양아동 교육비

6. 입양 숙려기간 한부모가족 지원비

7. 그 밖의 입양아동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서 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으로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2.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또는 치료에 관한 영수증

## 5. 신청인의 통장 사본

제8조(지원결정)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입양가정의 주민등록 주소

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 및 지급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 및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환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 양육수당  
[ ] 의료비  
[ ] 그 밖의 양육보조금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양 아동	성명	생년월일
	입양일	입양 당시 장애 유무(유[ ], 무[ ]) 질병 유무(유[ ], 무[ ])

양육 수당	신청금액	원(월	원)	지급	신청기간
				~	( 개월)

의료비	신청금액	의료보장 구분 (코드번호)
	진료기간	
	진료기관	진료내용
	총진료비	보험급여: 원 비급여: 원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 원

그 밖의 양육보조금	신청금액	원	신청내역
---------------	------	---	------

입금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양육수당, 의료비 또는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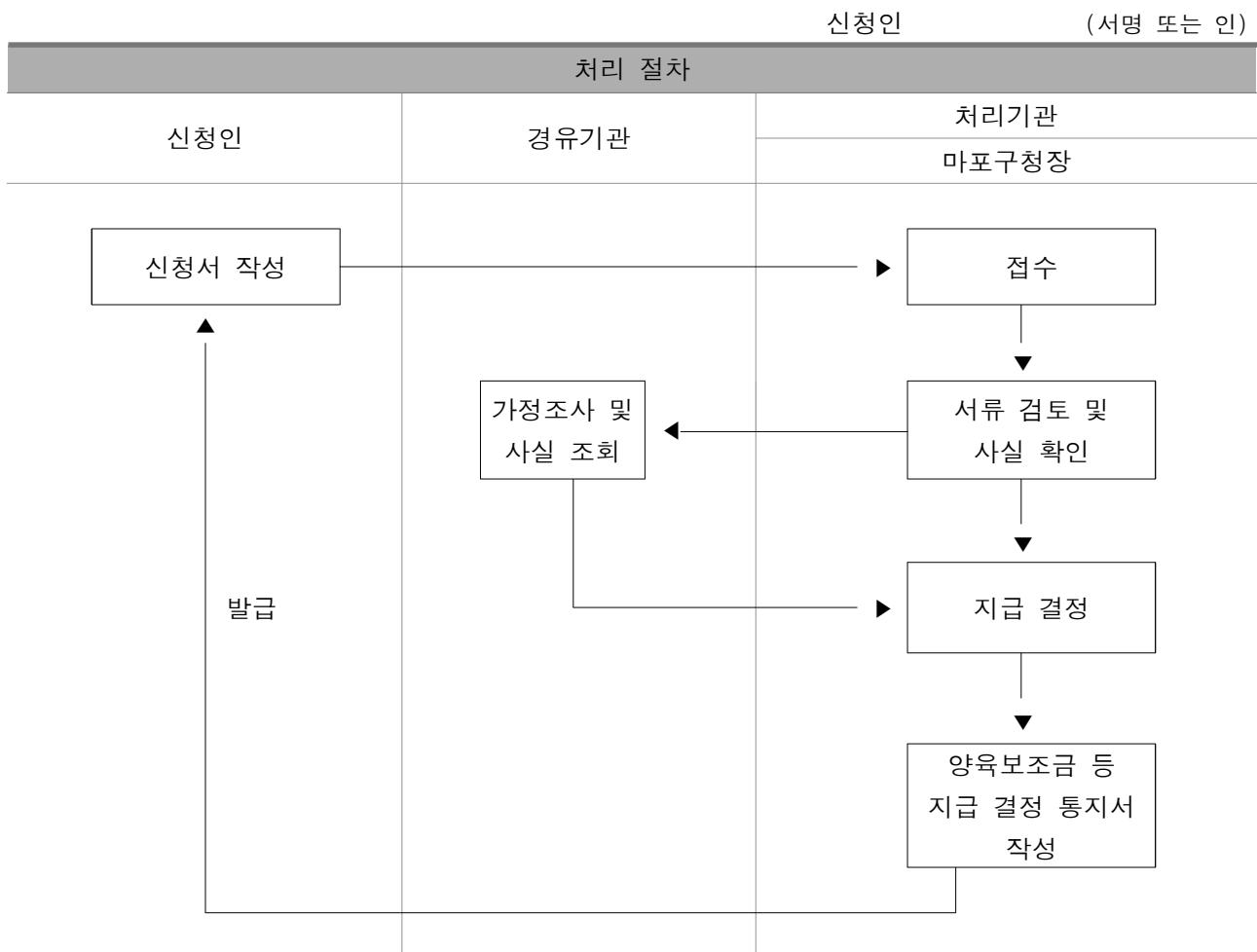
210mm × 297mm [백상지 80g/m<sup>2</sup>]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li> <li>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li> </ol> </li> <li>입양아동에게 장애 등이 있는 경우(「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li> </ul> </li> <li>「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또는 치료에 관한 영수증</li> </ul> </li> <li>「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양육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li> </ul> </li> </ol>
	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
	입양아동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양아동에 대한 위의 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통지서

[ ]양육수당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통지서 [ ]의료비**

[ ]그 밖의 양육보조금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구분	급여 · 서비스내용

[ ] 결정(적합)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급여내용	지급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급여개시일

[ ] 결정(대상제외)

대상제외사유
--------

귀하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번호

직인

마포구청장

안내 사항

- 입양아동 양육수당/장애인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지급 결정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 될 예정입니다. 다만,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는 그 다음달 20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 또한, 지급일(2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 · 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3호서식]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 및 지급대장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 및 지급대장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

####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인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내입양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법령에 맞는 용어 및 조항 정비 이므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 사업부서에서 재배정되어 교부받는 예산(국비, 시비)으로 마포구 세출 증가와는 무관함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가족정책과 정월순
연락처	02-3153-8611